

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른 표면처리산업 현황  
Sample of Presentation Title of Surface Engineering

이상오<sup>a</sup>

<sup>a</sup>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(E-mail: handogum@hanmail.net)

2015년 화관법 시행 이후 업계 실태

- 중소 및 영세 도금업체의 현황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기업부담 상승요인(신규 인력 채용 인건비, 시설 개축 비용 등)이 되고 있음.
- 현장 적용 시, 시설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매우 적용하기 어려운 제도라고 호소함.

도금 업체의 가장 부담스러운 업무

-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·설치·관리 기준의 이행
  -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중에서도 시행규칙 [별표 5]의 ‘제조·사용 시설 및 설비기준’, ‘실내 저장·보관 시설 및 설비 기준’, ‘실외 저장·보관 시설 및 설비기준’에 있어서 가장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음.

화관법 제도 이행을 위한 도금업계의 건의사항

- 유예기간 적용 등 제도의 완화
  - 한 예로서 실외 저장·보관설비의 펌프설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존설비 철거 후 재시공과 같은 중소기업체에 부담스러운 추가 투자가 발하게 되며, 따라서 ‘절대 적용 불가’라는 불이행이 아닌 법 이행을 위하여 최소한 3년의 유예기간과 같은 제도의 완화가 필요한 상황임.
  - 신축건물은 즉시 적용 가능하겠지만 기존시설이나 노후시설에 대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비용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음.
  - 대부분의 영세 도금업체는 임대건물인 경우가 많아 설비나 시설 투자에 난해한 경우가 있음. 또한 업체 이전 등의 상황 발생 시 이중 부담이 됨.
- 시설,약품 취급량 및 작업자 규모 차등적용
  - 화학약품관련 안전사고의 경우 취급 약품의 규모에 따라 사고규모도 다르게 발생하므로, 모든 업체에 대해서 동등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기업규모별 제도이행 여력을 고려하여 차등 또는 단계적 적용이 필요함.
  - 화관법 적용을 유예 받을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최대 취급량을 현행 100kg 이하에서 500kg ~ 1톤 이하로, 법 적용 작업자 규모를 5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규제를 완화시켜줄 것 등을 건의함.